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2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전진숙 · 이수진 · 최혁진
손 술 · 양부남 · 문금주
이개호 · 안도걸 · 전종덕
박홍배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협이자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

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관계 기반의 삶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돌봄을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누구든지 돌봄권을 보장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돌봄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돌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8조).

라. 혈연·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22조).

마.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를 보전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사. 돌봄청장이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3호) 및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돌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돌봄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의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 모든 공적·사적 활동을 말한다.
2. “비공식 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돌봄제공을 말한다.

3. “돌봄권”이란 모든 사람이 돌봄과 관련하여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받을 권리

나.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

4. “지정돌봄관계”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정한 상대방과 대가성 없이 형성한 상호 돌봄·보호 관계를 말한다.

5. “돌봄제공자”란 비공식 돌봄을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1인가구”란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며 생계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제공자가 일, 돌봄,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돌봄

권이 성별,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여 돌봄을 주고받아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돌봄의 공적 가치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돌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원칙

제7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성별, 연령, 장애, 가구 형태, 소득 등을 이유로 돌봄권을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돌봄의 관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급증 및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립·은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및

회복을 지원할 개인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식 돌봄 인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제공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제공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가족구성원 등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돌봄정책 추진체계

제13조(돌봄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돌봄청장은 돌봄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애주기별 돌봄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 ④ 기본계획은 제18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돌봄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돌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돌봄청장은 제출받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협조)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돌봄제공자의 규모, 처우 등에 관한 사항
3. 비공식 돌봄 제공 실태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돌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돌봄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국가돌봄지수 등) ① 돌봄청장은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공급, 돌봄제공자의 처우, 비공식돌봄 제공 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국가돌봄지수 및 지역돌봄지수 조사 결과,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돌봄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 및 지역돌봄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돌봄지수와 제3항에 따른 지역돌봄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돌봄정책위원회) ①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5.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회보고) 돌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4장 돌봄기금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돌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25조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지급
3. 제30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장 지정돌봄관계

제22조(지정돌봄관계 등록) ①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1인 이상을 지정돌봄제공자로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돌봄관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돌봄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한 지정돌봄관계자는 돌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돌봄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의 동의
2. 돌봄 서비스 신청의 대리
3. 실종신고, 긴급구호 등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조치 요청

4.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서 병문안·간병을 위한 접근권

④ 그 밖에 지정돌봄관계 등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돌봄제공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돌봄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지정돌봄제공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24조(지정돌봄관계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정돌봄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한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돌봄제공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지정돌봄제공자가 돌봄 대상자를 학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돌봄관계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돌봄기본소득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상호의존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제공자(지정돌봄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비공식 돌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2. 지정돌봄제공자로서 1인가구의 고립·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 및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돌봄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기본소득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돌봄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며, 다른 사회복지 급여와의 중복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돌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돌봄기본소득의 환수) ① 시·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기본소득 수령이 밝혀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25조제1항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3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 처방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와 고립·은둔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의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활동 및 관계망 연결을 포함하는 사회적 처방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처방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사회적 처방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거점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처방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보호) 지정돌봄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돌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0조(돌봄정보관리체계)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비공식 돌봄 현황, 돌봄인력·돌봄제공기관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돌봄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돌봄청장의 직무를 행한다.